

8. 辦理士 資格 및 需給管理 改善方案

副 教 授 李 德 祿

【目 次】

I. 序 論	185
(1) 研究의 目的	185
(2) 社會·經濟적 地位	186
II. 辦理士의 地位	188
(1) 法律的 地位	188
(2) 社會·經濟적 地位	189
III. 辦理士의 役割과 機能	194
(1) 出願前段階 서비스	194
(2) 出願段階 서비스	195
(3) 出願後段階 서비스	198
IV. 辦理士의 教育訓練과懲戒	201
V. 辦理士의 需給管理	204
(1) 現況과 問題點	204
(2) 辦理士의 資格 및 需給管理 改善方案	208
VI. 結 語	213

I. 序論

(1) 研究의 目的

國家의 經營經濟의 成敗 열쇠는 金融, 租稅, 行政의 巨大한 연결고리를
잘 푸는 데 있다. 새로 출범한 政府는 『新韓國創造』의 슬로건을 내걸고 『新
經濟創出』을 主要 國政指標의 하나로 삼고 있다. 具體的인 指標達成의 目標
로서 中小企業育成과 技術革新支援에 맞추고 있는 것은 때 늦었지만 꼭 다
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中小企業의 先導的育成 없이는 大企業의
製品이나 用役의 國際競爭力은 確保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經濟主體 특히
企業의 技術革新 없이는 商品의 價格이나 品質의 競爭力 確保는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現代 產業國家의 GNP 成長은 資本이나 勞動의 크기 보다는 技術開發에
의한 勞動生產性向上과 輸出增大에 그 基礎를 두고 있음은 여러 論文들에서
연구보고 된 바 있다.¹⁾

한편, 經濟主體 특히 公私企業의 技術革新過程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技術
management는 特定한 專門家에 의하여 管理된다. 民間企業의 組織으로서 特許專擔
要員, 國共立企業 組織으로서 研究管理委員이 바로 技術管理人 組織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生產 및 研究現場에서 技術관료로서 作用한다. 이 技術관
료集團에서 가장 專門化된 기술관료가 있어 發明技法, 技術의 權利化 事務
를 담당하는 新進기술관료로서 소위 辨理士(Patent Auoney, Patent Agent)
라고 하는 계층의 서비스 人力이 탄생되기 시작 하였다.

1) 대표적인 것으로서 Solow, R. M. "Technical Changes and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 1957 및 Denison, E. Account
for the United States economic growth, 1929-1969 Brookings Institute, 1974를 들
수 있다.

新種 技術관료로서의 변리사는 최초 英國에서 Solicitor들이 主로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제도 초기의 辨理士는 대부분 人文社會系列專工出身의 非技術系人事가 담당하였다.²⁾ 변리사는 經濟主體가 活動하고 있는 生產組織 또는 研究組織 等 發明現場에서 改發된 技術을 整理하고 그 結果를 特許廳에 出願 · 審查 · 登錄에 관한 제반 事務를 代行하게 된다. 그 뿐 아니라 特許權이 設定되면 特許出願人은 獨占排他的 財產權의 行使를 하게 되므로 財產權 行使 또는 特許權侵害와 관련하여 特許廳 또는 法院에 대하여 하여야 할 審判이나 訴訟 等 事務를 代行하게 된다. 따라서 辨理士라고 하는 新種 기술관료는 技術과 法律 양면에서 해박한 知識이나 經驗을 필요로 하는 職業群의 사람들이라고 하겠다. 오늘날 우리사회도 특정분야의 技術的 知識과 특허출원, 심사, 등록 및 특허권 침해 소송等에 관한 法律的 知識이 밝은 專門辨理士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매우 높다³⁾ 이 研究는 現代技術產業社會에서 要求되고 있는 전문변리사의 資格 및 需給 · 管理方案을 論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研究方法과 範圍

이 研究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英國 · 日本 · 美國 等의 辨理士 수급 및 관리 實態에 관한 기초적 調查資料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자격 및 수급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 2) 이 現象은 변리사자격시험합격자 선발과정에서도 나타났는 바, 1973년까지 총합격자 23명중 17명이나 되는 약 75% 인사가 人文, 社會系 出身이며, 1988년에 비로소 人文社會系出身對理工自然系 總合格者數가 64명:67명이 되어 이공자연계 비율이 50%를 넘게 되었다.
 - 3) 한국경제신문 제9277호, 93. 3. 20字. 이記事에서는 KIST의 고문변리사 K씨가 해외 출원 대리를 하였으나, 미국 · 유럽등의 특허명세서 작성요구를 올바로 수행치 못하므로 특허지연과 특허거절의 위기에 있으며 해외특허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序論에 이은 第Ⅱ章에서는 辨理士의 地位를 고찰하였으며 法律的 地位와 社會經濟的 地位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第Ⅲ章에서는 文獻調查를 통하여 辨理士의 役割과 機能을 分析하고 그 結果를 要約하였으며 第Ⅳ章은 辨理士의 教育訓練과 懲戒를 검토하였다. 第V章에서는 辨理士의 需給管理 現況과 問題點을 既存資料를 蔊集하여 分析하여 提示하고 새로운 資格需給管理改善方案을 모색하여 보았다.

第VI章은 結語로서 各章에서 導出된 결론을 要約하였다. 辨理士의 效率的 需給·管理方案을 接近함에 있어 資料빈곤으로 實證的이고도 事例比較方法을 導入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이 分野의 계속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I. 辨理士의 地位

(1) 法律的 地位

特許制度 初期에 英國等에서 辨理士의 業務는 法務士(Solicitor)나 技術者(Engineer)가 任意로 代行하였다. 英國의 최초 特許專門管理人은 William Hands 씨였으며 그의 職業은 Solicitor 였다. 1820년 William Newton은 년간 100여건의 特許文獻을 정리하여 London Journal of Arts 라는 題號의 冊을 發刊하였으며 그 後 그의 아들 Alfred Newton씨와 함께『Newton and Son』이라는 최초의 Patent Law Firm을 세워 英國 및 外國 特許代行 業務를 수행하였다. 1882年에는 소위 特許代理人(Patent agents)라고 指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원시적인 辨理士會(Institute of Patent agents)를 수립하게 되었다.

1888年 改正된 Patent Act에는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로 하여금 특허대리인 登錄名簿作成 根據을 가지도록 하였다. 그 해 開業代理人 257名中 70名이 등록하였으며 그 다음해 부터는 위 辨理士會가 施行하는 試驗에 합격하는 者에 限하여 변리사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1891年에는 변리사회가 王立辨理士會(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gents)라는 왕립기관으로서의 法的地位를 확보하므로서 변리사의 地位도 公認特許代理人(Chartered Patent Agents; C. P. A)으로 불리므로서 그 지위가 向上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開業代理人들이 여전히 등록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로서 1919年 Act와 1949年 Act 두 차례에 걸쳐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도 성실한 開業代理人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었다. 왜냐하면 1907年 Act에는 특허청장(Comptroller)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대리인은 그 代理權을 인정하지 아니한 바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 P. C)이 발효되면서 英國의 1978年 Patent Act에는 英國인으로서 EPO전문변리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EPO(유럽특허청)가 主催하는 유럽 특허변리사(European Patent attorney) 資格試驗에 합격하여 EPO의 專門代理人名簿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특허전문변리사가 탄생하기까지는 특허제도의 창시국인 英國에서
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辨理士의 法律的 地位(Legal Status)는 1961年 制定한
辨理士法에 의하여 보장하였다. (1961. 12. 23 法律第864號) 이 法律은 辨理
士는 特許 · 實用新案 · 意匠 또는 商標에 관하여 特許廳 또는 法院에 대하여
하여야 할 事項의 代理 및 그 事項에 관한 鑑定 기타의 事務를 行하도록 그
法律的 業務範圍를 規定하였다 (同法 第2條). 法院에 대하여 하여야 할 事
項은 特許 · 實用新案 · 意匠 또는 商標에 관한 事務에 대하여 訴訟代理人이
될 수 있는 地位에 있다(同法 第8條). 辨理士의 資格을 取得할 수 있는 者
는 滿20歲 以上의 國民으로서 ①辨理士資格試驗에 合格하여 1年以上 實務修
習을 마치고 一定한 銓衡試驗에 合格한 者(同法 第3條1號; 以下 1號 辨理士
라 함), ②辯護士法에 依하여 辯護士資格을 가진 者로서 辨理士登錄을 한 者
(同法 第3條 2號; 이하 2號 辨理士라 함) ③ 特許廳에서 5級 이상의 公務員
으로서 通算하여 5年以上 審判 및 審查事務에 從事한 者(同法 第3條 3號; 이
하 3號 辨理士라 함) 等으로 그 資格要件은 法定化되었다. 辨理士業務는 特
許廳에 登錄하므로서 開始하고 2年마다 更新登錄(第5條)하여야 한다. 변리
사는 業務上 知得한 發明考案의 内容등을 漏泄 또는 窃用한 경우는 懲役 또
는 罰金刑에 처할 수 있게 되거나 (第21條) 懲戒處分으로 인하여 業務停止
또는 除名될 수 있다. (第17條)

(2) 社會經濟的 地位

기술관료로서의 辨理士라고 하는 職業群 階層 人事의 社會經濟的 地位
(Socioeconomic Status)는 時代와 關聯法律에 規定된 辨理士의 業務範圍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어느 時代이던 특수계층에 속하는 職業群의 人事의 사
회경제적지위는 높다. 오늘날 現代 科學이 社會를 리이드하는 產業技術社會
에서는 『산업기술』과 관련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
위는 일반적으로 높다. 예컨대 경제주체로서의 企業內의 組織에서도 高級
또는 정밀계통의 技術 또는 技能人の 勞賃水準은 높게 마련이고 社內에서의
社會的 지위도 따라서 높게 된다. 研究組織에서의 研究員과 生產組織에서의

技術人力의 賃金水準도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기술관료로서의 辦理士의 社會經濟的 地位도 科學技術의 發展速度와 함께 크게伸張되어 왔다. 辦理士의 業務範圍는 1986. 12. 31 변리사법 改正 以後 變動이 없으므로 변리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論하는 데 固定變數로 보면 된다. 우리나라 변리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5個年間 변리사자격시험 응시자 수를 보면 表1과 같다. 表에서 보듯, 최근 5개년간 변리사자격 시험 응시자 수는 연평균 약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응시자 수의 급격한 증가율은 새로운 기술관료계층으로서의 변리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급격히 향상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表 1. 최근5個年 변리사자격시험결과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비 고
총 응시 자수	1,661	1,714	1,930	2,471	2,894	연평균증가율 약 15%
1차 합격자수	256	155	187	726	289	
합격율(%)	15.4	9.0	9.7	29.4	10.0	
최종합격자수	19	14	19	30	30	
경쟁율	1.0	0.7	0.9	1.0	0.8	

주 1) 합격자는 각과목 평균 60점이상인자로 어느 한과목에 40점 이하를 받지 않은자는 합격하지 않음.
 2) 경쟁율은 당해년도 1차합격자수와 전년도 1차합격자 잔류자수의 합에 대한 당해년도 최종합격자수를 나눈값임.

(자료 : 특허청)

表 2는 최근 5個年間 4, 5급 심사·심판관 출원 및 변리사 개업현황을 보인 표이다. 산업재산권 출원 및 심판청구 건수의 급증에 따라 심사심판관이 최근 5개년간 60名이 충원되었으나 이에 반하여 같은기간 동안 25명의 심사심판관 출신인력이 퇴직후 즉시 개업하므로 이 분야의 노동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더우기 5년동안 2~5급 총퇴직자수

39명 중 산하단체의 장급(長級) 자리이동 기타 취업을 제외한 인력 64%에 해당되는 25명이 퇴직후 즉시 변리사사무소를 개설하였다는 것은 변리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그 만큼 크게 높아졌음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表 2. 심사·심판관 증원 및 변리사 개업 현황

구분 년도별	심사· 심판관수	퇴직후 즉시 변 리사개업인력수	퇴직인력수 (2~5급)	심사관(5급) 증원인력수
1987	103 (112)	7	11	15
1988	103 (112)	6	8	7
1989	152 (161)	4	7	24
1990	152 (161)	2	4	13
1991	163 (172)	6	9	20
계	60 (0)	25	39	79

주:()내 숫자는 항고심판관(2~3급) 포함
자료:특허청년보, 1992 pp 225-227

表3은 심사관 보직발령후 3~5년차에 해당되는 특허청 일반직 5급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표본은 국제특허연수원에 심판관교육과정에 입교한 심사관중에서 임의 추출(Random Sampling) 하였으며 표본의 크기는 20명으로 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변리사자격 취득후 행동에 관한 것이였다. 질문의 종류로는 변리사자격 취득후 ①즉시개업 ②차후개업 ③계속근무의 3종류로 하였으며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직종별로 분류 행정직과 기술직으

로만 분석하였다.

表 3. 변리사자격취득후 계속근무여부 설문조사결과

계속근무여부 직별별	①즉시개업	②차후개업	③계속근무	표본계
기술직	4	12	1	17
행정직	0	2	1	3
계	4	14	2	20
비율 (%)	20.0	70.0	10.0	100

주) 개업(Opening the Law firm)은 단독개업과 Partnership등 동업을 포함하고 있음.

表에서 보듯, 변리사자격취득 後 계속근무여부를 묻는 質問에 대하여 技術職과 行政職 各1名을 除外한 전체표본의 90%에 해당되는 18名이 開業意思를 표시하였다. 특히 한 것은 변리사자격취득 즉시 개업을 계획하고 있는 심사관도 20%나 되었으며, 개업의사가 없는 2명의 심사관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개업에 드는 費用을 그 理由를 들고 있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경력 3~5년이상의 특허청공무원의 90%이상이 辨理士 開業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리사라고 하는 職種이 상당히 社會經濟的 地位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변리사의 社會經濟的 地位를 직접 確認하기 위하여 두가지 實態調查를遂行하였다. 그 한가지는 稅金共除前 月平均 收入現況이고 다음것으로는 標本에 대하여 辨理士라고 하는 現職業에 관한 自己滿足度의 調查이다.

표본의 크기(Size)는 20명으로 하였고, 표본의 성질은 特許廳 審查 또는 審判官 出身으로 단독 또는 공동개업하여 5~15년 경력을 가진 辨理士를任意追出하였다. 前者の 實態調查結果는 報告者的 參考資料로 하기로 하고 이研究에서는 發表를 保留하였다.

表4는 標本의 변리사로서의 職業滿足度에 관한 調査結果를 요약한 것이다. 標本調查結果는 技術職과 行政職別로 區分하고, 電氣·電子專工 5名, 化學·藥品 또는 生命工學專工 5名, 機械·金屬·土建 2名, 人文社會專工 5名으로 하였다.

表 4. 특허청 출신 개업 변리사 직업만족도

단위 : 명

	전 공 별	불 만 족	만 족	아주만족	계
化學技術系	전 기·전 자·통신	0	1	4	5
	화학·약품·생명공학	0	1	4	5
	기 계·금 속·토 건	0	1	4	5
	소 계	0	3	12	15
人文社會系	인 문 사 회 계	0	1	4	5
총 계		0	4	16	20

주) 이표본중 단독개업변리사수는 10명, 공동개업변리사수 10명임.

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허청 4-5급 공무원중 심사·심판관 출신 변리사 개업경력 5-15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에 관한 불만족을 표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과학기술계나 인문사회계 공히 20%가 만족하고 있으며 80%는 아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변리사라고 하는 기술관료 직업의 사회경제적지위가 절대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모두 상당히 높다는 것을 직접 반영한다고 보겠다.

以上 文獻이나 實態調查結果 알 수 있듯이 변리사의 社會經濟的 地位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平價할 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이 분야 人力의 需給을 적절히 調節해야 한다고 하는 社會的 問題(Social Problem)를 벌써 提起하고 있다고 하겠다.

III. 辨理士의 役割과 機能

一般的으로 辨理士의 役割은 產業財產權登錄 出願과 財產權行使와 관련하여 出願人(또는 發明者나 考案者)과 權利所有者(Proprietor)에게 專門的인 service를 提供하는 데 있다. 전문적인 서비스의 種類는 出願前段階, 出願段階 끝으로 權利取得後段階로 區分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具體的인 辨理士의 機能을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 出願後段階 Service

변리사는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서(이하 특허 출원서라함)와 명세서(이하 특허명세서라함)를 作成하기 前 발명자 혹은 출원인과 통상 다음 세가지를 논의하게 된다.

첫째, 特許可能性 즉 發明의 特許性(Patentability)에 대한 service이다. 發明者가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發明이 新規한지, 進歩性이 있는지, 產業的利用性이 있는지 논의하게 된다. 다만, 발명의 산업적 이용성, 신규성 및 진보성은 발명자의 이야기만을 고려할 뿐, 이의 判斷은 全的으로 特許出願後 發明을 審查하는 審查官의 役割이므로 이에 關한 助言(Comment 나 Advice)에는 스스로 限界가 있다고 하겠다. 發明者도 이 點들에 대하여는 통상 특별한 조언을 요구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部分에 대한 責任있는 Service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當該發明을 出願할 것인가, 產業秘密(Technical Know-How)로 維持할 것인가에 대한 서비스이다.

發明者도 自己가 開發한 技術 즉 自己의 發明을 第三者가 特許出願하여 權利를 取得할 우려를 감수하더라도 이것을 技術的 Know-How로 維持할

것인가, 特許出願하여 保護할 것인가에 대한 助言을 요구하게 된다. 이 問題는 경우에 따라 매우 慎重을 기하여 Service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다. 왜냐하면 辨理士는 모든 情報에 대하여 秘密(Confidences)을 유지하여야 할 責任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發明者가 自己의 發明을 technical Know-How로 유지하지 않고 特許出願할 것으로 決定(Decision Making)할 경우 發明者는 끝으로 어느 나라에 대하여 出願하여 特許保護받을 것인가에 대한 助言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辨理士는 이 點에도 상당히 注意를 요해야 될 것인 바, 海外에서 特許取得費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代理人이 提供하는 Service의 質은 그의 知識과 經驗에 依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의미에서 辨理士의 教育訓練(On the Job-training)은 辨理士가 良質의 service를 고객에게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변리사의 管理側面에서 매우 重要한 社會的 問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段階의 Service의 内容은 ①出願可能한 國家 ②當該發明이 特許되는 경우 市場性 有無와 程度 ③出願·審查關聯 諸費用 ④出願方式 即, 個別國家別로 할 것인가 PCT Route 또는 EPO Route를 利用할 것인가 等等이다.

(2) 出願段階의 Service

特許出願國家와 出願方式을 決定하였으면 特許出願人은 통상 다음 단계로서 特許出願明細書(The Specification)과 特許請求의 範圍(The Claims)를 作成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 단계는 변리사의 기능 중 가장 重要하고 時間이 많이 걸리는 Service가 된다. 특히 명세서 작성시 중요한 것은 形式이 아니라 内容이다. 예컨대, 특히 명세서 작성은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의 순서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등,

특허청구의 범위는 공지기술을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 Jepson Type의 청구항 기재라든지 또는 均等物의 청구항은 Markush Claim의 기재를 한다든지의 형식논리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重要한 Service는 發明의 技術的事項을 처음부터 詳細히 記載하여야 한다는 點과 特許請求의 範圍를 作成할 때 發明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技術的事項만을 全部 記載해야 한다는 點을 지적할 수 있다. 또 특허명세서와 청구범위 形式은 추후 보정이 가능하나 發明의 상세한 설명이나 특허청구범위의 추후 보정은 要旨를 變更하여 補正却下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리사는 발명자와 특허청에 대하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Service를 제공하여야 할 責任이 있다 하겠다. 發明의 상세한 설명부분(The descriptoin of the Invention)은 發明內容을 公開하는部分이므로 당해 발명분야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자(以下 當業者)가 용이하게 實施(Working) 할 수 있을 程度로 發明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實施例나 實驗例를 明細書에 적절히 公開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므로서 技術情報를 公衆(Public)에게 公開하여 국가산업발달을 促進하고 特許制度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게 된다. 特許明細書는 公衆에게는 技術情報文獻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데 대하여 特許權者에게는 特許權利文書로서의 機能을 가지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特許請求의 範圍(The Clamis of the Patent Application)는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규정하는 부분이므로 당해 발명을 構成하는 기술적사항 全部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發明의 기술적구성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특허청구의 범위는 權利文書의 機能을 수행하므로 特許權發生後 司法的判斷의 對象이 되기 때문이다.

特許出願段階에 있어서 明細書 및 請求範圍作成 Service의 質도 辨理士의 이 분야 經驗과 知識에 依存하는 바 크므로, 辨理士의 수급관리의 중요한 變數가 된다.

特許出願段階의 두번째 Service는 特許廳에 대하여 出願을 代行하는 것이다. 特許明細書, 圖面, 초록 기타 法定書類가 준비되었으며 審查請求書 作成을 논의하게 된다. 이 때 出願關聯書類를 최종 점검하고 특히 청구범위와 도면이 만족한 水準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特許請求의 範圍의 請求項數는 權利範圍를 명확히 하는 의미와 出願費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시 확인 할 필요가 있게 된다. 특히 출원인이 出願關聯준비서류에 滿足하는 경우 委任帳을 받아 出願書類에 첨부하게 된다. 따라서 辦理士는 出願料와 明細書作成 및 出願代行料 그리고 必要한 경우 審查請求料를 받아 出願事務를 代行하게 된다. 출원이 끝나면 辨理士는 出願日字가 기재된 出願番號通知書를 받아 保存하거나 出願人에게 送付하므로서 出願代行業務를 마치게 된다.

特許段階의 세번째 Service는 出願계류중의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즉 特許出願後審查官에 의하여 特許性을 審查하여 登錄하는 過程에서의 서비스를 들 수 있다. 特許出願을 하게 되면 먼저 특히청 出願課(Filing Section)에서 方式審查를 받게 된다. 이 때에도 特許法上 方式에 관한 各種審查結果 補正을 수행하기로 한다. 그런데 實體審查段階에 들어오면 實體심사관(Substantive Examiner)에 의한 특허성 심사결과 보내어지는 거절이유통지서에 대한 意見書作成, 경우에 따라서는 特許明細書나 圖面의 補正(Addition or Correction)을 하여야 하고 아주 흔하게는 특허명세서중 청구범위를 減縮 또는 變更하는 補正을 수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의 意見書, 補正書提出의 Service는 특허권의 설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Service가 된다.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을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경우에는 最初明細書에 記載한 技術的要旨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행하도록 注意해야 한다. 최초명세서의 기술적 요지를 變更한 것으로 인정되는 보정에 대하여는 審查官의 職權에 의한 補正却下決定處分을 받게 된다. 물론 이 보정각하처분에 대하여는 出

願人이 불복하는 경우 이를 抗告審判請求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서비스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출원계류중의 서비스는 이 밖에도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關聯技術分野의 공개문헌이 있는 경우 情報提出서비스나, 공고문헌이 있는 경우 異議申請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實體審查段階에서 出願인의 委任事項에 따라서는 出願形式을 變更하는 變更出願, 出願內容을 分割하는 分割出願에 관한 서비스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特許出願의 포기, 취하業務도 수행하게 되며 出願이 特許되는 경우 特許料(우리나라의 경우 公告料와 함께)를 등록하여 納付하게 된다.

(3) 特許許與後段階 Service

特許料를 納付하므로서 特許權의 設定이 이루어지며 辯理士는 特許證을 교부 받은 特許權者로부터 委任事案에 따라서는 特許廳, 法院 기타 檢察에 대하여 해야 할 事項을 代理한다. 特許許與後 特許權者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辯理士의 業務는 따라서 特許廳, 審判所 또는 抗告審判所, 法院 또는 檢察에 대한 것으로 區分해 볼 수 있다.

첫째, 特許廳에 대하여 하여야 할 事項으로는 各種登錄 또는 申告, 審判 또는 抗告審判請求를 들 수 있다. 그 重要事項으로 特許權存續期間延長登錄出願(S 90), 通常實施權契約 및 設定登錄(S 118), 通常實施權設定에 관한 裁定申請(S 107), 特許權의 移轉, 消滅 또는 處分의 制限, 專用實施權의 設定, 移轉, 變更, 消滅 또는 處分의 制限, 特許權 또는 專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 移轉, 變更 또는 處分의 制限에 관한 登錄 및 特許權, 專用實施權 기타 質權의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 그 趣旨의 申告(S 101), 在外者의 特許管理人の 選任 또는 그 變更登錄(S 5), 特許權에 대한 權利範

圍確認審判(§ 135), 無效審判(§ 133), 通常實施權許與審判(§ 138), 訂正許可審判(§ 136), 訂正許可無效審判(§ 137), 特許權存續期間延長登錄無效審判(§ 134)의 請求 等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변리사는 出願人 또는 特許權者를 代理하여 委任의 範圍內에서 審查 또는 審判請求結果에 不服하는 경우 抗告審判請求 業務에 대하여 Service할 수 있다(§ 167).

둘째, 法院에 대하여 하여야 할 서비스는 抗告審判結果 出願人 또는 權利者가 不服하는 경우 이들을 代理하여 最終審이 되는 大法院에 上告를 代行할 수 있다. 다만, 特許廳의 出願課, 登錄課, 審判所 또는 抗告審判所에 대하여 節次를 밟은 特許出願, 登錄, 審判 또는 抗告審判書類, 見本 其他物件이 法令이 定한 規定에 위배되어 반려 또는 不受理 等 行政處分을 받고 이에 不服하는 경우 辨理士는 行政法院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裁判請求의 代理業務를 서비스 하지 못한다.

셋째, 檢察에 대하여 하여야 할 事務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辨理士法에 明文化되어 있지 않으나 同法 第2條 文末에 記載된 『鑑定기타 事務』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변리사는 特許權者, 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의 要請을 받아 特許廳, 法院 또는 檢察에 提出할 目的으로 有效特許 대 有效特許 혹은 有效特許 대 (가)號發明에 대한同一 또는 類似與否에 관한 鑑定 Service를 수행할 수 있다.

特許許與後段階에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質은 변리사의 法律的 知識이나 經驗에 특히 依存하는 바 크다. 따라서 변리사는 法院 또는 檢察에 대한 良質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民法, 民事訴訟法, 刑法 및 刑事訴訟法等에 관한 法律的 知識과 經驗이 要求되므로 이 分野에 대한 教育訓練 等 변리사의 管理側面의 職務教育(On the Job training)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現行 特許法과 辨理士法에 規定된 변리사의 業務役割, 機能을 表 5에 要約하여 두었다.

表 5. 辨理士의 特許業務, 役割 機能 要約

區分 機關別	主要 Service의 종류		
	특허출원전 단계	특허출원 단계	특허허여후 단계
특허청, 심판소 및 항고 심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성 관련 신규성, 진보성 조사, 평가 ◦ 출원여부 조언 ◦ 출원대상국가 조언 ◦ 해당발명의 국가별 시장성 조언 ◦ 출원, 심사, 등록관련 비용에 대한조언 ◦ 출원 Route에 대한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출원명세서, 도면, 청구범위 작성 ◦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및 제출 ◦ 특허출원서류의 접수 및 견본제출 ◦ 제3자 공개기술에 대한 정보제출 ◦ 경고서 작성 및 발송 ◦ 이의신청 ◦ 분할출원신청 ◦ 변경출원신청 ◦ 출원의 포기, 취하 ◦ 특허료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신청 및 동무효심판청구 ◦ 실시권 계약(Licensing) 및 등록 ◦ 통상실시권 설정을 위한 재정신청 ◦ 특허권 및 실시권의 이전, 소멸, 변경제한 등록신고 ◦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 무효심판청구 ◦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청구 ◦ 정정허가심판 및 정정허가 무효심판청구 ◦ 항고심판청구
법원 및 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고심결불복 대법원 상고 ◦ 감정서 작성 및 제출

IV. 辨理士의 教育訓練과 懲戒

변리사의 資格取得에 대하여는 第2章 (1)節 变리사의 法律的地位에서 이미 說明하였다. 우리나라 변리사의 需給側面에서 볼 때, 特許廳長이 施行하는 변리사자격시험합격자 즉 1號辨理士로 充員하는 제도는 적극적 수단에 의한 勞動力의 供給이라 하겠으며 나머지 辯護士資格을 가진자 즉 2號辨理士 혹은 審查·審判事務從事者 즉 3號辨理士에 의한 充員方法은 消極的 手段에 의한 勞動力의 供給이라 할 수 있다. 변리사라고 하는 신진 기술관료의 高級勞動力を 공급하는手段이 現代 우리 產業社會에서 과연 적합한지는 다시 點檢해야 하겠으나 여기서는 論外로 하고 이들 세가지 充員類型의 변리사에 대한 職業訓練과 관련하여 教育訓練實態를 分析하면 다음 表 6과 같다.

表 6. 辨理士 教育訓練現況

출신별 구 분	1號辨理士(변리사시험 합격자)	2號辨理士(변호사자격 취득자)	3號辨理士(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출신)
교육훈련의 법적 근거	변리사법 3조 1항 1호	없 음	없음. 단 청직원 변 리사자격부여 대상자 연수지침(지도28510- 20호, 92.1.23)에 따 르고 있음.
자격취득사전사후 교육유무	사전교육 있음, 사후교 육 없음.	사전사후 교육 없음	사전교육 있음, 사후 교육없음.
커리큘럼의 특징	산업재산권법 및 그 관 련과목	없 음	산업재산권법 및 그 관련과목
교육훈련방법	연수원 합숙, 강의 및 실습	없 음	연수원 합숙, 강의 및 실습

출신별 구 分	1號辨理士(변리사시험 합격자)	2號辨理士(변호사자격 취득자)	3號辨理士(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출신)
교육훈련내용	이론과 실무	없 음	이론, 실무
교육훈련기간	변리사자격취득전 1년	없 음	변리사자격 취득전 5개월 1주
교육훈련 평가 문제점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의 법이론 중복교육효과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 해부족으로 서비스능력 결여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의 법이론 중복교육 문제

表에서 보듯, 변호사자격 취득자 즉 第2號辨理士에 대하여는 産業財產權制度의 복잡성등에 비추어 辨理士資格取得을 위한 職務와 관련 事前 혹은 事後의 아무런 實務 또는 理論教育이 制度化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科學技術者나 發明者에게 良質의 Service를 充分히 할 수 있다고 아무도 保障할 수 없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두번째는, 特許廳 審查·審判官 等 5級以上 公務員에 대한 辨理士資格부여 조건으로서 教育訓練에 관한 法的根據가 未備하다는 點이다.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辨理士法 第3條 1項 3號에 의하면 特許廳에서 通算하여 5년이상 심사 심판事務에 종사할 것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專門辨理士라고 하는 職務와 관련하여 資格損與前後 第1號 변리사처럼 변리사법에 明文化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現行 内部決裁를 받아 運用하고 있는 “廳職員 辨理士資格損與對象者 研修指針”은 이를 辨理士法施行令 혹은 施行規則으로 끌어올려 制度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므로서 形式論理上으로 1號辨理士들의 事前教育訓練과의 均衡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Curriculum의 科學化와 細分化가 요구 된다고 하겠다. 現在 施行하고 있는 1號辨理士에 대한 職務教育訓練 Program은 産業財產權關聯 및 그 周邊科目을 中心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1號辨理士中에서 人文社會

系列專工者에게는 一部法律科目이 重複(예컨대 民法 等)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3號辨理士 커리큘럼에도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重複되는 教科目을 피하기 위하여 必須科目 이외에도 選擇科目을 두어 教育訓練對象者の 專工에 따라 一部科目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工夫하도록 교과목을 再調整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人文社會系列專工者에 대하여 필요한 선택 과목으로 自然科學概論 등의 科目을 設定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므로서 職務 교육의 重複性을 피하고 辨理士로서 多樣한 知識을 함양케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辨理士는 職務上 公人으로서의 업무상 지득한 秘密을 지켜야 할義務가 있다. 따라서 辨理士의 公人으로서 가져야 할 道德性과 邊法精神을 직무교육과 함께 教育시켜야 한다. 이런 點에서 辨理士法에서는 辨理士의懲戒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共通必須科目으로 辨理士의 懲戒 科目도 新設하여 教育되어야 할 것이다.

변리사의 登錄 등 資格管理와 1號辨理士試驗計劃의樹立施行은 특허청 管理局(指導課)이 遂行토록 하고 있으나(1992. 8. 31 대통령령 제1372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辨理士가 변리사법 또는 辨理士會則 등의 규정에 위배될 때에는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을 거쳐 商工部長官에게 그事實을 申告하거나 職權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은 辨理士懲戒委任會를 소집하여 징계처분을 議決할 수 있다(변리사법 第18, 19條 및 第20條), 징계처분의 종류에는 請責, 過怠料, 業務停止 기타 除名等을 규정하고 있다.(同法 第17條)

V. 辨理士의 需給管理

(1) 現況과 問題點

專門的 기술관료로서의 辨理士의 社會 經濟的 地位가 他勞動人力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높은 것은 第Ⅲ章 (2)節에서 검토하였다. 변리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 分野의 勞動力의 需給에 社會的 問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이미 지적하였다. 賃金은 市場에서 勞動의 需要와 供給量에 의하여 決定된다. 변리사의 労賃이 높다는 것은 反射的으로 特許廳出身의 公務員 예컨대 審查·審判官의 잣은 退職과 辨理士의 開業을 促進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表 2-3 參照).

변리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 분야 勞動力의 需給에 責任 있는 行政機關이 그동안 需給管理를 不合理하게 하였다는 點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변리사의 年度別, 出身別, 開業現況은 表7과 같다. 表에서 보듯, 우리나라 개업 변리사의 수는 1975年度 98名이고, 그後 10年後인 1985年度에 165名으로 約1.6倍 增加에 그쳤다. 한편 日本의 경우는 1975年度 2,200名에서 10年後인 1985年度에는 2,900名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約1.3倍 增加 되었다. 그러나 絶對勞動供給量에서는 우리나라가 67名증가하는 동안에 日本은 700名이 增加하였다는 데 注目해야 할 것이다.

表 7. 年度別, 出身別, 辨理士開業現況

(단위 : 명)

出身別 年度別	1號 辨理士	2號 辨理士	3號 辨理士	계	비 고 (日本의 경우)
1975	22	27	49	98	2,200
1980	26	21	45	92	2,536
1985	59	38	68	165	2,900

出身別 年度別	1號 辨理士	2號 辨理士	3號 辨理士	계	비 고 (日本의 경우)
1985	59	38	68	165	2,900
1986	66	43	85	184	3,048
1987	73	48	83	204	3,131
1988	83	52	91	226	3,224
1989	95	57	95	247	3,342
1990	113	76	99	288	3,436
1991	119	76	105	300	
1992	137	76	111	324	

자료 : 특허청

表8은 産業構造의 國際比較를 보인 表이다. 1인당 국민소득 6,000불수준이 되고 제조업분야 소득구조비가 40%가 넘어선 우리나라 1990년도와 日本의 1975年度의 개업변리사수를 비교하면 한국 288名 대 일본 3,436名으로 되어 개업 변리사의 엄청난 차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비율이 40%가 넘어서고 1인당 국민소득 6,000불인 때의 두나라 개업변리사수는 日本의 8%에 不過하여 변리사의 勞動力이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不足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실변리업무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뿐아니라 변리사 노동력 공급 부족으로 노임의 상승을 초래하여 왔다.

表 8. 산업구조의 국제비교

(단위 : %)

	한 국 (1990)	일 본 (1975)	미 국 (1972)	대 만 (1989)
농 림 수 산 업	5.2	3.8	3.9	4.6
광 업	0.5	0.4	1.4	0.5
제 조 업	49.6	42.3	35.7	54.9
전력 · 가스 · 수도 및 건설	12.2	12.1	10.7	8.1
서 비 스 업	32.5	41.4	48.3	31.9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은행, "90년 산업연관표"

주) 위 표는 1인당 GNP 6,000불 수준 연도를 비교하였으며 산업연관표상 국내 산출액을 기준 함.

表9는 辨理士 需給現況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서 專工別 需給不均衡을 보인 것이다. 表에서 보듯, 최근 3個年間 변리사자격시험 합격자를 분석해 보면 科學技術系 對 人文社會系列의 選拔比率은 75% : 25%에서 대체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科學技術系의 細部專工別 선발율은 엄청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表 9. 專工別 변리사시험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전 공 별	세부전공별	1990	1991	1992	계	비율(%)
과학기술계	전기 · 전자	1	2	6	9	11.4
	기계 · 금속	5	2	4	11	13.9
	화학 · 식품	4	4	7	15	19.0
	약학 · 생명공학기타	5	14	5	24	30.0
	소 계	15	22	22	59	74.7
인문사회계	법 학	1	3	2	6	7.6
	경영 · 경제	1	2	3	6	7.6
	어 문	2	2	1	5	6.3
	기 타	0	1	2	3	3.8
	소 계	4	8	8	20	25.3
	총 계	19	30	30	79	100.0

자료 : 특허청.

表10은 최근 3個年間 특허 · 실용신안출원을 기술분야별로 분석한 표이다.

表 10. 技術分野別·年度別 特許·實用新案出願 現況

(단위 : 건)

기술분야별 년도별	1989	1990	1991	계	비율 (%)
전기·전자	2,990	7,096	7,577	17,663	41.2
기계·금속	2,834	4,092	3,886	10,812	25.2
화학·식품	1,459	2,392	2,307	6,158	14.4
약학·생명공학기타	1,992	3,028	3,193	8,213	19.2
계	9,275	16,608	16,963	42,846	100.0

자료 : 특허청 년보, 1992. p131 발췌

表 10에서 보듯 전기·전자 분야의 최근 3個年間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비율은 全體의 41.2%를 차지한다. 이에 비하여 表9에서 보듯, 이 分野 변리사 합격자 선발비율은 최근 3個年간 11.4%에 不過하여 需給管理의 問題點으로 지적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약학 생명공학분야의 최근 3개년간 변리사 합격비율은 30%에 이르는데 비하여 전 產業分野의 이 분야 특허·실용신안 출원비율은 20%에도 이르지 못하여 著作·생명공학기타 분야의 변리사는 지나치게 過剩供給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辨理士 需給管理의 不適正現象은 產業財產權登錄出願件 對 開業辨理士數의 比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表11은 1990년도 末 현재 韓日間 主要指標를 比較한 것이다. 表에서 알 수 있듯, 연구원수는 日本의 40%以上을 차지하는 데 比하여 產業財產權出願은 15%를 약간 상회하여 研究開發活動이 현저히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辨理士 勞動力은 日本의 8.6%에 不過한데 比하여 出願量은 日本의 15.6%를 차지하므로서 辨理士 1人當 Service 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事實은 변리사 노동력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적어 변리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나치게 높히는 결과가

되어 왔다. 변리사 1人當 年平均 受任件數는 396건대 219件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변리사는 日本의 辨理士에 比하여 1人當 80%이상의 勞動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日本과 단순비교 하더라도 辨理士資格試驗에 의한 적극적 手段을 동원하여 現在의 辨理士充員數의 80%(288名×0.8=230名)에 해당하는 230名을 더 증원했어야 할 것이다. (1990년 현재) 이렇게 하여 변리사의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餘他產業分野戰士와 평준화하므로서 특허청 심사심판관의 퇴직이나 離職現象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表 11. 主要指標 韓·日比較

일본 한국	산업재산권등 록출원 (건)	연구원수 (명)	개업변리사수 (명)	변리사 1인당 평균수임건수
한국 (1990)	114,069	70,503	288	396
일본 (1975)	731,080	165,614	3,342	219
비율(%)	15.6	42.6	8.6	180

자료 : WIPO 통계, 1991.

(2) 辨理士資格 및 需給管理의 改善方案

第IV章을 通하여 변리사의 資格管理의 現況과 문제점을 이어서 第V章 (1)節을 통하여 변리사 需給管理의 現況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第IV章과 V章을 통하여 나타난 변리사 資格 및 需給管理上의 問題點은 表12에 整理要約하여 두었다.

上記 도출된 問題點에 따른 改善方案은 다음과 같다.

表 12. 辨理士資格 및 需給管理上 問題點 要約

	문 제 점
자격 관리	<p>① 2號辨理士(辯護士) 資格取得者에 대하여 아무런 產業財產權에 대한 事前 또는 事後職務教育未備로 고객에게 良質의 Service 기대 困難</p> <p>② 3號辨理士에 대한 資格損與條件으로서의 事前職務教育訓練에 관한 強制的 法的根據 未備</p> <p>③ 專門辨理士 資格損與를 위한 國際特許研修院의 Curriculum의 細分化 未備 - 自然科學概論, 변리사의 정계, PCT등 선택과목 미비.</p>
수급 관리	<p>① 개업변리사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 - 1990년 현재 230명 不足</p> <p>② 1호변리사 채용시 과학기술계 세부전공별 선발비율의 불균형 - 전기전자분야 과소공급, 화학약품 분야 과잉 공급</p>

① 辯護士出身의 2號辨理士資格 取得者가 職務教育訓練을 開業前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良質의 변리업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2호변리사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法的根據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 사법시험합격자중에서 소정의 국제특허연수원 교육을 받도록 변리사법을 개정하고 교육훈련에서 소정의 성과를 올린 자에게만 변리사자격을 부여토록 명시할 수 있다. 현재 변리사등록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는 현행 2年마다 更新登録하도록 되어 있는 변리사법 관련규정에 변호사의 갱신 등록 요건으로 산업재산권의 職務教育를 받도록 明示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변호사는 그 등록을 取消하도록 규정한다.

- ② 特許廳 5級以上의 一般職公務員으로서 審判·審查業務에 5年以上 통상적으로 근무한 者는 辨理士 資格을 取得할 수 있도록 한 現行 变り사법에는 어떠한 教育訓練을 職務上 받아야 하는 지 規定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3號辨理士資格 取得者에 대한 事前 또는 事後 職務教育訓練機關, 訓練內容, 訓練期間 등에 대한 關聯條文을 辨理士法에 明示하는 法改正이 있어야 한다.
- ③ 專門辨理士 資格損與件件으로 施行하는 職務教育을 위하여 國際特許研修院의 Curriculum에는 人文社會系出身과 自然科學系列 出身에 적합하도록 現行의 교과목에 自然科學概論, 辨理士의 懲戒, PCT, EPC等의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등 細分化 할 필요가 있다. 变り사의 대고객 Service의 良이나 質은 그들이 教育訓練받은 Curriculum의 内容에 따른 知識과 經驗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 ④ 특히 청의 審查·審判事務에 종사하여 辨理士資格을 취득하려는 者에 대하여는 장차 理工系 出身 審查·審判官이 法學系列大學院에서 法學碩士學位를 取得하는 경우 혹은 人文社會系列의 審查·審判官이 理工系列 大學院 碩士學位를 取得하는 경우에는 辨理士資格 取得을 위한 國際特許研修院에서 수행하는 職務教育訓練을 一部 혹은 全科目 면제할 수 있도록 合理化하기 위한 但書規定도 辨理士法에 規定하면 좋을 듯 하다. 이와 관련하여 優秀 專門辨理士를 社會에 배출하기 위해서는 特許公務員의 在職中 國內外 大學院에 入學·留學할 수 있도록 (理工系·出身은 法學系列에, 人文社會系列出身은 理工系列의 大學院에) 制度의인 뒷받침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財源을 마련하기 위한 豫算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良質의 對고객 Service는 理工系와 法學分野 共히 專門知識을 가진자가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美國 特

許系가 理工系전공자가 法學을 工夫한 후에 MIP(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學位나 JD(Juris Doctor) 學位를 수여하도록 하여 배출되는 辨理士가 엄청나게 많은 現實을 감안 우리 辨理士法이 이를 조장할 수 있는 制度的 뒷받침을 檢討할 때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 ⑤ 開業辨理士數는 發明者나 科學技術者에 대한 誠實한 Service의 質에 直接的으로 作用한다. 開業辨理士의 數는 辨理士資格試驗에 의하여 選拔하므로서 增大시키도록 한다. 絶對選拔人員數의 決定은 產業構造에 있어서 製造業比率과 1人當 GNP 水準을 基礎로 하고 產業財產權 總出願量 對 開業辨理士數의 國際比較로서 행하는 方法이 그 한 方案이 될 수 있다. (表 8, 表 11참조)
- ⑥ 辨理士法 第3條①項1號辨理士의 選拔은 人文社會系專工者 對 自然科學系專工者 比率을 調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理工系出身 辨理士의 選拔은 專工別로 均衡이 맞도록 一定比率로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細部專工別 選拔計劃은 最近 3個年間 特許와 實用新案 出願量의 合計에 電氣·電子分野의 출원, 機械·金融分野의 出願, 化工藥品分野의 出願, 食品·生命工學의 출원, 土木建築分野의 出願 等 세부 전문기술분야의 出願比率로 決定하는 方案이 그 하나가 될 수 있다. 전공별 개업변리사의 均衡을 이루는 것은 변리업무 특히 분야별 서비스의 質을 크게 向上시키고, 辨理業務 勞賃의 平均化를 誘導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 ⑦ 끝으로 特許管理人制度를 신설하는 문제이다.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企業의 연구소나 생산현장과, 특히변리사간의 신속한 業務連絡이 매우 긴요한 情報化시대가 되었다. 그 뿐아니라 特許廳의 出願·登錄과 관련되는 부수적 업무처리도 매우 중요해 져가고 있다. 특히법률사무소

에 소위 ‘事務長’은 그 人氣가 날로 증대되고 있고 사회경제적 지위도 높아져가고 있어 희귀직종화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辦理士數의 절대적 증가 필요성 못지 않게 소위 이 事務長數의 계속적 공급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특허청의 6級以下 공무원으로서 審查·審判事務에 一定期間(예컨대 5年 또는 7年 以上) 근무하여 知識과 經驗이 있는者에게 『特許管理人』(假稱) 資格證을 부여하는 制度의 檢討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므로서 소위 事務長制度를 공식화하고 公人으로서의 役割도 증대시킬 수 있다.

IV. 結語

現代 産業技術社會에는 새로운 形態의 기술관료그룹인 辨理士의 役割이 중요해 져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들의 社會經濟的 地位는 대단히 높아 人氣職種에 속한다. 변리사의 機能은 公人으로서 發明者를 代理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이나 검찰에 대하여 하여야 할 業務를 서비스한다. 변리사가 수행하는 서비스의 質은 그들이 받은 교육훈련의 성과 즉 産業財產權分野의 知識과 經驗에 의존한다. 변리사의 서비스의 질은 개업변리사의 절대수에 영향하며 또한 그들의 전공에도 크게 영향받는다. 1990년 말 현재 산업재산권 충출원전수대 개업변리사의 한일비교에 의하면 약 230名이 부족하다. 변리사의 전공별 공급량은 전기·전자등 첨단분야가 엄청나게 부족하고, 화학약품분야의 과잉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변리사의 균형있는 공급과, 교육훈련관리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특히 2호변리사 즉 변호사의 변리사자격취득요건중 사전 또는 사후의 산업재산권 교육훈련요건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변리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특히 청출신 변리사 즉 3호변리사와 시험출신 즉 1호 변리사의 자격관리를 위한 Curriculum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우수한 특허청 출신 변리사의 공급을 위하여 법학 또는 이공계 대학원 이수를 권장하고 변리사자격 취득요건을 변리사법에 보완하여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검토된 변리사자격 및 수급관리방안 이외에도 반도체 칩 배치설계,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등 신지적 재산권분야의 변리사 代理에 대한 業務領域 문제 변리사제도 운영의 전문화 내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변리법인 및 합동사무소 설립문제 그리고 1997년도 제3청사 대덕단지 이전에 따른 경력심사관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특허청 심사관보(6, 7급 직원)의 변리사자격부여문제 등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의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변리사법 개정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立法研究가 시급하고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參 考 文 獻

- 特許廳, 特許廳年報, 1992
- WIPO, Introduction to Patent Law and Practice. 1989
- 特許廳, 產業財產權法令集, 1990
- Robert L. Harman, Patents and the Federal Circuit, 1988
- 韓國銀行, 90年產業關聯表, 1991
- Neill Daveport, The United Kingdom Patent System. 1979